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887
----------	-------

발의연월일 : 2023. 12. 11.

발 의 자 : 최승재 · 이현승 · 우신구
김영선 · 권명호 · 박덕흠
양정숙 · 강준현 · 이원욱
최영희 · 이 용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몇 년간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중소기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2023. 10. 4.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원자재값으로 보기 어려운 노무비, 전기요금 등 경비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예를 들어 금형(金型) · 주조(鑄造) · 용접(鎔接)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 대비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총 영업

이익의 절반가량을 전력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건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없어 현행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주요 원재료’의 정의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원사업자가 추가 하도급거래를 구실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이 비자발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항·제17항 및 제3조제4항제4호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항 중 ““주요 원재료”란”을 ““주요 재료비등”이란”으로,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를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로, “원재료를”을 “비용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7항 중 “원재료”를 “재료비등”으로 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하도급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원재료”를 “재료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4호 중 “원사업자와”를 “수급사업자의 요청으로 원사업자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변경·갱신되는 하도급거래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⑮ (생략)	제2조(정의) ① ~ ⑮ (현행과 같음)
⑯ 이 법에서 “주요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 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 이 하도급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단 서 신설>	⑯ -----“주요 재료비등” 이란----- -----소요되는 재료비, 노 무비, 경비 중----- -----비용을-- -. 다만, 하도급대금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하도급거래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할 수 있 다.
⑰ 이 법에서 “하도급대금 연 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0 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 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 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 한다.	⑰ ----- -----재료비등----- ----- ----- ----- ----- -----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존) ① (생략)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 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2. (생략)

3.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서면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그 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 3. (생략)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재료비
등-----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3. (현행과 같음)

4. <u>원사업자와</u> 수급사업자가 하 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 하기로 합의한 경우 ⑤ ~ ⑫ (생략)	4. <u>수급사업자의 요청으로 원사 업자와</u>----- ----- ----- ⑤ ~ ⑫ (현행과 같음)
---	--